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1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기덕, 강대호, 김경우,  
김기대,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태수,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유정희, 이준형,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홍성룡 의원(29  
명)

## 1. 제안이유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제시함(안 제3조제9호)
-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

##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에너지의”를 “인하여 에너지의”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홍보의”를 “교육·홍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을 “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을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추진사항”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너지이용”을 “그 밖에 에너지이용”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속 가능한”을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위해”를 “위하여”로, “대하여는”을 “대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 가능한”을 “지속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보수시”를 “개보수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2항에 따른”으로, “제품을,”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보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만드는”을 “만든”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의 변동으로”를 “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하여”로,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을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 백서”를 각각 “에너지백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7.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u>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u>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p> <p>8. “에너지복지”란 경제적인 이유로 <u>에너지의</u> 보편적 사용이 제한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p> <p>9. “에너지공동체”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u>에너지공동체</u>를 말한다.</p> <p>② (생   략)</p> <p>제4조(시의 책무) ① (생   략)</p> <p>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 보장, 에너지</p>	<p>제3조(정의) ①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수급권자</u> ----- --.</p> <p>8. ----- --- <u>인하여 에너지의</u> ----- ----- ----- -----.</p> <p>9.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u>마을단위 주민주도의 에너지 절약·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u>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홍보의 강화 및 연구·개발·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8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

8. (생략)

③ (생략)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 교육·홍보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에너지계획) ① -----

----- 서울특별시 에너지계획-----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  
-----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1. -----

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 3. (생략)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1조(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  
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  
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  
----- 추진에 관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  
-----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속가능한 -----  
-----  
-----.

제12조(건물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하여 -----  
----- 대해 -----  
----- 따른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은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의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2. ~ 5. (생략)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 제품의 구매사용
  3. ~ 4. (생략)
- ② (생략)
- ③ 제2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

제13조(수송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  
-----  
-----  
-----.

1. -----  
-----  
-----  
----- 모든 -----
2. ~ 5.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①  
-----  
-----  
-----  
----- 지속가능한 -----  
-----.

1. (현행과 같음)
  2. ----- 개보수 시 -----  
-----
  3.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 제품



을,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 등 포함)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5조(에너지원단위 설정)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및 건축물(신축 및 기존 건축물 포함)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이를 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6조(에너지사용 제한) 시장은 국내외 에너지 사용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산업

을 사용하여야 하고, -----

④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보다 -----

제15조(에너지원단위 설정) ① -----  
----- 만든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에너지사용 제한) -----  
----- 사용량의 변동으로 인하여 -----  
----- 도모하기 -----  
----- 범위-----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8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 (생략)

② 제1항의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제20조(의견청취) 시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

-----.

1.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  
-----  
-----  
-----  
-----  
-----  
-----  
-----.

제20조(의견청취) -----  
-----  
-----  
-----

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4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생략)

② 시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백서)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 그러지 않다.

제22조(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녹색 일자리 창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각 호의 사항을 -----  
-----.

1. ~ 4. (현행과 같음)

제24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자 -----.

제25조(에너지백서) ① -----  
-----  
----- 에너지백서 -----  
-----.

② ----- 에너지백서 -----  
-----.

1. ~ 4. (생략)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신·  
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  
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①  
-----  
-----  
-----  
----- 마련-----  
----.

② ~ ⑥ (현행과 같음)